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제 대 군 인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행정규칙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전직지원금을 인상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 비효율성을 반영하여 전직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국가보훈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하도록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 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국가보훈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	100분의 50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 ----- ----- ----- <u>국가보훈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한다.</u>
1. <u>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0만원</u>	<u><삭 제></u>
2. <u>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u>	<u><삭 제></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제32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비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전쟁기념사업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건립·운영하는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2. 삭제 <2007.12.20>	
3. 국가가 관리하는 고궁·능원	100분의 50
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민속박물관	100분의 50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 중인 체육시설 및 주차장	100분의 50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5713